기존규제 정비위원회 운영지침

제정 2020. 8. 28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의 취지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 소관 규제(이하 "기존규제")를 정비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기존규제 정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- 1. 기존규제의 자체 정비에 관한 사항
- 2. 자체 정비 외에 직·간접적으로 규제 개선 건의가 제기된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
- 3. 기타 기존규제의 정비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- 제4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,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.
-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영기획본부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.
- ③민간위원은 규제 또는 인터넷침해사고,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보호 소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경영기획본부장이 위촉한다.
- ④내부위원은 직제규정 제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총괄부서팀장 및 제규정관리 주관 부서팀 장으로 경영기획본부장이 위촉하다.
- ⑤경영기획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.
- 1. 제3조에 규정된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
- 2.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포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
- 3.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5조(위원의 임기) ①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-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.
- ③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하다.

제6조(간사)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략기획팀장으로 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.

- 1. 위원회 안건의 준비, 작성, 배부 및 심의결과 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
- 2.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,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
- 3.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
- 제7조(회의의 운영) ①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위원장은 심의 안건 등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- ③위원장은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정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정비에 대한 의견제출자나 이해관계인 등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④간사는 회의결과를 소관부서에 통보하고, 소관부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받아 필요한 경우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⑤소관부서에서는 조치결과를 간사에게 통보한다.
- 제8조(개회 및 의결정족수 등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9조(제척) 경영기획본부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,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 할 수 있다.
- 제10조(수당)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(안건검토수당, 회의참석수당 등)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1조(위원회 운영 등) 그밖에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 <2020. 8. 28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자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